

수산업을 제대로 알자

2023. 06. 21. (수)

소장/겸임교수 이 광 남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책임운영기관





목 차

Contents

I. 개 요

II. 수산자원 포획·채취 현황

III. 비어업인 수산자원보호 개선방안

수산업을 제대로 알자

개요

배 경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관심 증가, 도구 및 방법 다양화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로 인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에 대한 관심 증가
- 규정에 맞지 않는 도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관련 현행규정 미비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대한 현행 규정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령해석에 혼선이 많음
- *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또는 방법이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불법행위자 양산 우려

어업인·비어업인 간의 갈등 및 민원 발생

- (낚시인-어업인) 낚시는 어업인들에게는 생계유지의 수단이나 낚시이용객들에게는 단순한 레저행위임
- (낚시인-지역민) 특정 낚시시즌(봄철 및 가을철)에 낚시이용객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등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필요성

제도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이용 및 보호정책 추진 필요

- 비어업인의 '허용된 장비' 7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마련 필요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마릿수 및 종량 등 제한 설정(금어기·금지체장 등)
- 불법행위에 대한 근거마련 및 벌칙(과태료 부과) 강화 등

수산자원 포획·채취시 안전 관련 규제 필요

- 최근 비어업인의 야간을 틈탄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난 만큼, 수산자원 포획·채취시 안전과 관련된 규제 필요
- 비어업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규제가 없어, 안전장구(구명조끼 등)를 착용하는 등 필수 안전 수칙 제정 필요

어업인·비어업인간 상생 방안 마련 필요

- 비어업인들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을 통해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상생 방안 마련 필요

가. 비어업인 관련 국내 법령

✍ 어업인이 아닌 자(비어업인)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구분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4. 가리, 외통발 5. 낚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가. 비어업인 관련 국내 법령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됨.(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구분	주요내용
수산자원 관리법 제14조 (포획·채취 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3.24>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채취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비어업인 관련 국내 자치법규

강원도 낚시제한 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

☑ 낚시어선의 무분별한 문어 포획으로 문어 연승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 ▶ 강원도 내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강원도지사 관할 수역에서는 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을 타고 낚시로 문어(대문어, 참문어, 발문어)를 잡는 것을 제한하며 위반 시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1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가 입법예고함.
- ▶ 그러나 입법예안을 발표한 지 8일 만에 조례안 제정을 재검토 발표
 - 고성, 양양, 강릉지역 낚시어선 선주들의 강원도환동해본부 항의방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합리한 조례안 제적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3일만에 2,340건에 육박
 - 당초 개최하는 임시회에 상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의견 조율을 위해 상정을 유보하기로 결정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원도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제한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시대와 낚시줄·낚시바늘 등 도구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산동물로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體長)·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낚시제한수역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낚시제한기준의 적용수역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로 한다.

제4조(낚시제한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어류: 대문어, 참문어, 발문어

제5조(과태료) 제4조의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비어업인 관련 국내 행정규칙

① 충주시 고시 제2005-123호

☑ 내수면에서 유어행위 허용범위 높아지는 국민의 레저욕구에 부응하여, 건전한 유어행위는 허용하고 무분별한 유어행위는 제한하는 내용의 내수면어업법 개정(법률 제7477호, 2005.3.31. 공포, 2005. 10.1 시행)에 의거 내수면에서의 유어행위 허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고시

〈충주시 고시 제2005-123호〉

1.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 또는 방법
 - 가.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 나.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 다. 가라·외통발
 - 라. 집게·갈구라·낚·호미
 - 마. 손
 - 바. 투망(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므로 충주시 관내 전 내수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내수면에서 유어행위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어구 또는 방법
 - 가.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 나. 잠수용 스쿠버장비
 - 다. 작살
 - 라. 기타 제1항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
3. 제한 및 허용근거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4. 위반시 처벌 : 과태료 30만원(내수면어업법 제27조제1항)

다. 비어업인 관련 국내 행정규칙

② 제주특별자치도 고치 제2021-86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치 제2021-86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에서의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단,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제3조(제한 및 조건)

- 1) 마을어장 내에서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한다.
- 2)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시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잠수용 장비(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 등)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시 신고어업인과 협업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 4)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을 포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I

수산업을 제대로 알자

수산자원 포획·채취 현황



1 어업인 및 비어업인의 정의(1/2)

가. 어업인

어업인이란?

- ☑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함.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38호))

자율관리참여어업인

- 2020.6월 기준 전국 1,118개의 자율관리공동체, 참여어업인수 약 6.4만명
-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권역 공동체로 구분됨
- 자율관리어업은 현행 수산관련 법안에서 **불법어획 및 자원남획, 지역별·어업별 분쟁 등의 문제점 해결**에 의의가 있음
- 주요 활동으로는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가 있음
- 법률: 「수산자원관리법」의 한계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4개 조와 부칙, 동법 시행령 9개 조와 부칙, 동법 시행규칙 1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 공동체 자체규약 제정, 공동체에 금전·재산의 출연 및 기부 등

어촌계

- 2019.12월말 기준 전국 어촌계수 총 2,039개, 어촌계원수 124,462명
- 1975년과 2010년 제외, 어촌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역별로 어촌계는 전남(41.9%), 경남(23.2%), 충청(8.3%), 경북(7.5%) 순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정의되지만,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규제를 두고 있음.
 -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촌계의 설립, 정관, 계원, 사업 등
 - ② 수산업법: 어촌계 관련 마을어업 등의 면허,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이전·분할 또는 변경, 어장관리, 조업수역 등의 조정, 유어장 지정 등
 - ③ 어촌·어항법: 어촌계 관련 종합개발사업과 재생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
 - ④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촌계 관련 면허신청, 마을어업 면허 등

1 어업인 및 비어업인의 정의(2/2)

나. 비어업인

비어업인 이란?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를 의미함.

국내 비어업인 규모 추정 근거

- 어업인의 아닌 자를 비어업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국내 총인구에서 어업인을 제외**하면 비어업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그러나,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에 기반한 어업인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다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어업인 확인서”를 통한 어업인의 현황**을 통해 국내 성인(20세 이상)의 총인구에서 어업인을 제외함으로써 비어업인을 추정할 수 있음
- 어업인이 아닌 자를 비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인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각의 해당 항목에 대한 중복성, 어업인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목적의 어업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어업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 **비어업인을 정량적·통계적으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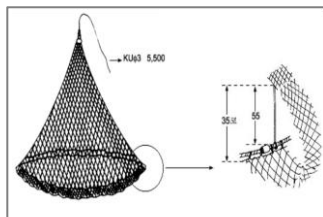
최근 **비어업인들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이 늘고 있음
-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에 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허용된 방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2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현황

가. 비어업인 규정 허용 어구(1/6)

㉠ 투망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을 말하며, “투승”이란 낚시나 줄을 투망하는 것을 말함(수산업법 제24조제2항 별표1의 2)
*전국 강, 하천, 호수 및 바닷가의 얕은 수심에서 이용, 연중 사용가능(주로 여름철 유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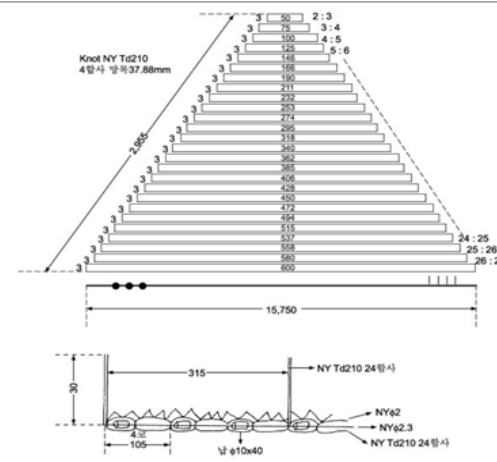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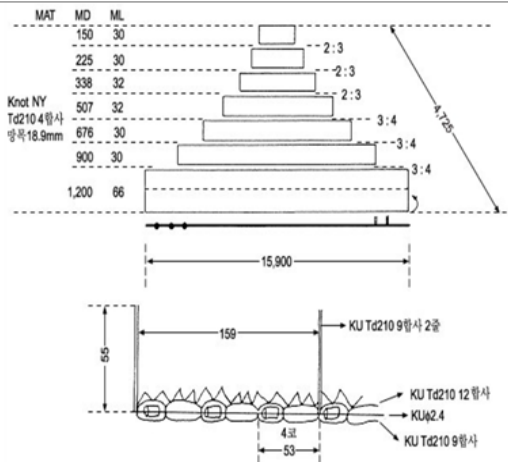


〈투망방법 및 주요어종〉

구분	해수면	내수면(어업허가시)
방법	투망의 특성상 주로 해변에서 던지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던질 수 없어 해변 근처의 어종과 바닥에서 서식하는 어종은 포획하기 어려움	주로 민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기수역”에서 주로 투망낚시가 이루어짐.
어종 특징	어군을 형성하는 정착성, 회유성 어종	소하성 어종
주요 어종	송어(주요 어종), 꿈치, 복섬(줄복) 등	은어(주요 어종), 잉어, 모래무지, 쏘가리, 메기 등

〈투망의 크기별 특징〉

소형 투망	대형 투망
· 포획 대상이 주로 비교적 작은 어류를 대상으로 할 때 이용 · 은어, 모래무지 등 · 직경 : 2~3m · 그물코의 크기 : 20mm 내외	· 비교적 큰 어류와 해면에서 이뤄지는 어업활동 시 이용 · 잉어, 붕어, 송어 등 · 직경 : 5~6m · 그물코의 크기 : 40mm 내외



가. 비어업인 규정 허용 어구(2/6)

1) 규정된 허용 어구

*반두, 쪽대(족대), 4수망은 과거 전국 강, 하천에서 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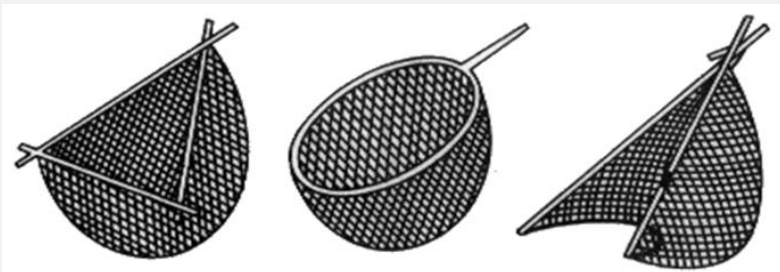
⑥ 반두, 쪽대(족대), 4수망

“반두 및 쪽대(족대)”는 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을 말하며, 반두와 쪽대(족대)에 대한 차이는 양쪽 손잡이 사이의 그물이 움푹 파인 모양이 쪽대(족대)이며, 평평한 모양이 반두로 명시

반두, 쪽대(족대)

- 쪽대는 ‘틀에 그물을 붙여 물 위를 스칠 듯이 떠올리도록 된 어구’로서 채그물류의 일종으로 채그물을 족대그물이라고 하며, 족대그물에는 쪽지그물(대가 1개)과 쪽대그물(대가 2개)이 있음.
- 법령에 나타난 쪽대는 채그물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음.
- 어획은 들망류와 달리 어획물을 채어 올리는 방식으로 실시됨.

〈채그물(쪽대)의 종류〉



4수망

- 손을 사용한 1인이 사용 가능한 소규모 들망의 일종으로 물고기가 어구 위에 위치하면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어획하는 도구
- 들망은 바다 밑이나 중간쯤에서 그물을 깔아놓고 물고기를 그 위로 유인한 뒤 들어올려 잡는 그물을 나타냄.(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어획은 물고기가 어구 위에 위치하면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실시됨.



가. 비어업인 규정 허용 어구(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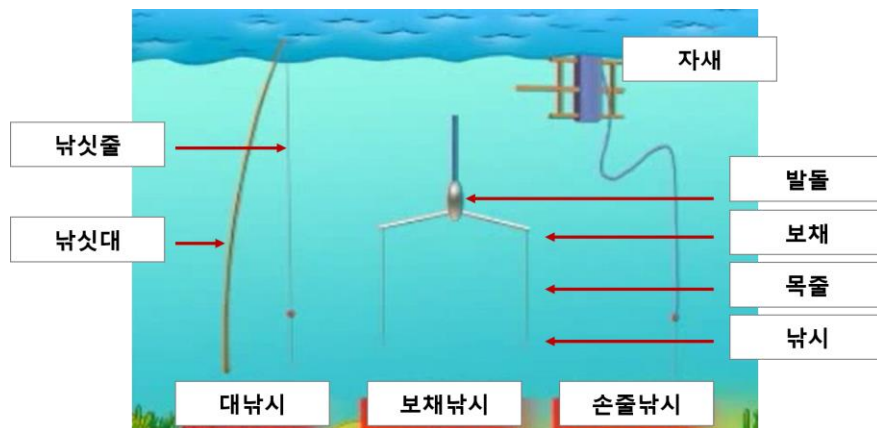
1) 규정된 허용 어구

© 외줄낙시
(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낙시줄 한 가닥에 낙시를 한 개 또는 여러개를 달아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대상물을 낚아 잡는 어업

- ▶ 외줄낙시는 대낙시, 보채낙시, 손줄낙시로 구분할 수 있음
- ‘낙시줄’과 ‘낙시대’, 낙시줄을 감아두는 ‘자새’
 - 낙시를 수중으로 내리기 위한 ‘발돌’
 - 낙시가 묶이는 줄인 ‘목줄’, 한 줄에 낙시줄에 2개에 낙시를 수평으로 달기 위한 ‘보채’, 낙시 로 구성되어 있음

〈외줄낙시의 구성〉



▶ 대상어종 : 참돔, 농어, 방어, 조피볼락 등

- (방어 외줄낙시) 낙시줄을 발돌 가운데에 있는 구멍에 끼워 넣어 발돌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음
- (문어 외줄낙시) 낙시 4개가 한 묶음으로 구성된 봉 낙시를 사용(강원도, 경북지방)

▶ 사용미끼

- 새우류 즉 꽃새우, 중화 등을 사용하며 기타 갯지렁이, 오징어, 미꾸라지 등도 사용
- 특히 제주도 지방에서는 방어를 잡기 위해 자리돔을, 강원도와 경북지방에서는 문어를 잡기 위해 돼지비계를 미끼로 사용

가. 비어업인 규정 허용 어구(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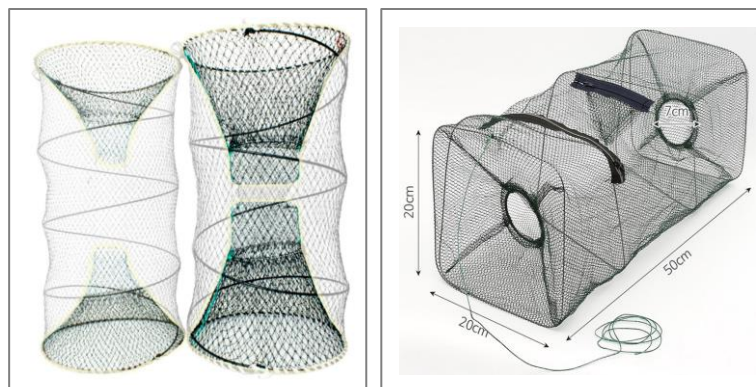
1) 규정된 허용 어구

㉠ 가리, 외통발

여러 가지 형태의 고정된 모양이거나 일정한 형태의 틀을 만들고, 그 바깥 부분에 그물감 등을 씌워 윗면 또는 옆면에 한 개 이상의 입구를 만들어 그 통속에 미끼를 넣어서 수산동물을 유인해 통속에 갇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 ▶ 어구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 부표와 어구를 연결하는 부표줄, 부표줄과 부표줄을 연결하며 통발 어구가 달려있는 모릿줄, 모릿줄과 통발을 연결하는 아릿줄, 어구를 해저에 고정시키는 닻과 닻줄, 그리고 통발로 구성

〈 통발의 구성 〉



▶ 대상어종

- 근해기타통발어업 : 붉은 대게, 피불고둥, 꽃게, 기타 골뱅이, 문어, 쥐노래미 등
- 연안통발어업 : 문어, 봉장어, 피불고둥, 꽃게, 기타 낙지, 골뱅이,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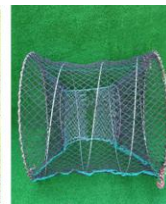
▶ 미끼

- 주로 고등어, 정어리, 청어 등을 사용하며 통발은 채취하는 어종에 따라 통발의 세부적인 모형과 기능의 차이가 있음.

〈 통발의 종류 〉



〈강어통발〉



〈바다통발/참게통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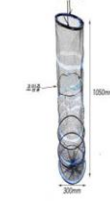
〈민물통발/구꾸미살림망〉



〈민물/바다점용살림망, 부력망〉



〈민물/바다점용살림망〉



〈민물/바다점용살림망/해류사용〉

가. 비어업인 규정 허용 어구(5/6)

1) 규정된 허용 어구

㉔ 낚대

동해나 남해에서 긴 장대에 낚을 매달아 베어 해조를 채취하는 어구를 말함

울진·울릉지역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

- ▶ 낚대와 관련된 어업 중 하나로 울진·울릉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있음
(2021.3.8.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 ▶ **시기** : 매년 음력 3~5월 사이 파도가 잔잔한 날에 주로 이루어짐
- ▶ **방법** : 2명이 한 조를 이뤄 떼배를 타고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한 사람은 창경(수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낚으로 미역을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낚 작업이 편리하도록 떼배를 움직임



출처 : 국립해양박물관



출처 : 뉴시스(NEWSIS),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2021.03.08.)

가. 비어업인 규정 허용 어구(6/6)

1) 규정된 허용 어구

㉠ 집게, 갈고리, 호미

주로 갯벌에 서식하는 어종(쏙, 개불 등)들을 포획하기 위한 장비로 주로 갯벌 체험어장 등에서 소금을 이용한 체험활동시 이용됨

- ▶ 갈고리, 호미는 주로 꼬막이나 바지락 등 갯벌에 대량으로 군집하여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 시 사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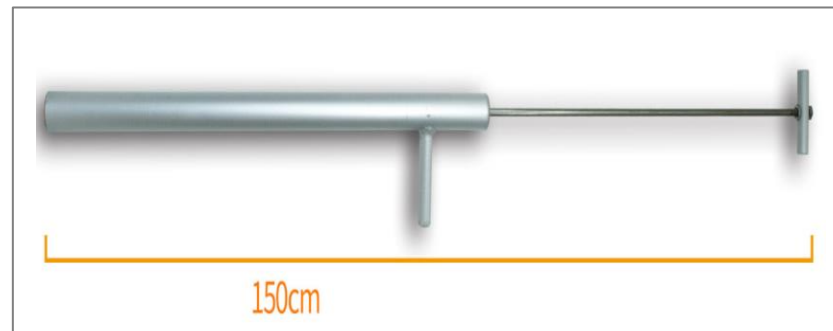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 개불펌프

개펄에서 불법 개불잡이 도구인 일명 “빠라뽕”을 이용하여 개불채취에 이용되고 있으며 1m가량 되는 길이의 펌프 형태로, 개펄의 구멍에 펌프질을 해 개불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구성

- ▶ 이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개불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펄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성행
- ▶ 개불펌프는 약 1.5m의 길이로 주사기의 원리와 유사하게 손잡이를 잡고 위로 잡아당기면 공기의 압력으로 개불이 빨아당겨져 채취함.

〈 개불펌프의 모형 〉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1/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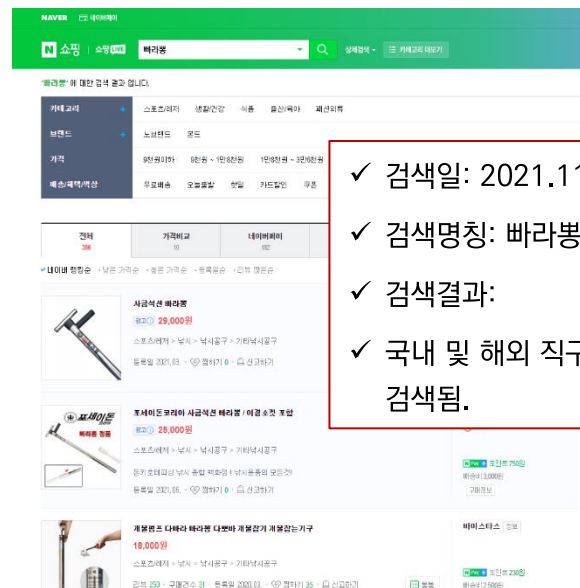
㉠ 개불펌프

개펄에서 **불법 개불잡이 도구인 일명 “빠라봉”**을 이용하여 개불채취에 이용되고 있으며 1m가량 되는 길이의 펌프 형태로, 개펄의 구멍에 펌프질을 해 개불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구성

▶ 대상어종

-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불**을 포획
- 어획강도 : 초보 비어업인도 개불 100마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쉬워 어획강도가 높음

- ▶ 현재 인터넷 검색 통해 손쉽게 구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판매자도 구매자도 불법여부의 확인 및 인지가 없이 구매가 이뤄지고 있음.



- ✓ 검색일: 2021.11.08.
- ✓ 검색명칭: 빠라봉
- ✓ 검색결과:
- ✓ 국내 및 해외 직구 포함 386개 온라인 제품이 검색됨.

▶ 단속현황

- 합동 단속반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금어기·금지채장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추진
-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계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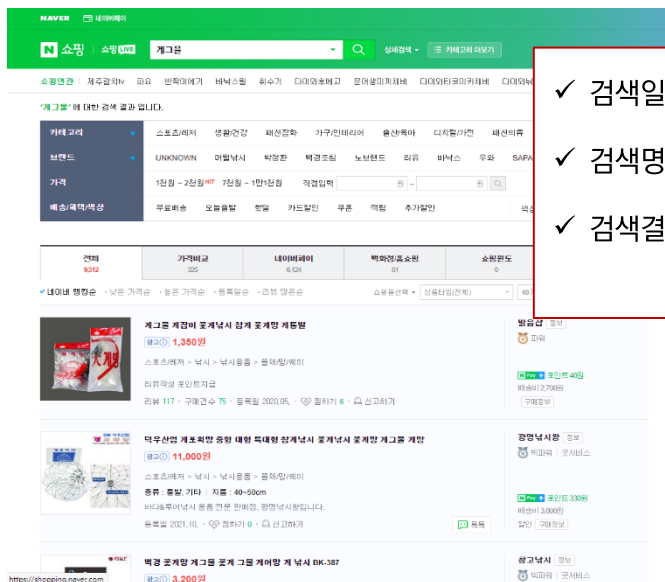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2/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㉞ 게그물, 게포획망

게그물은 백사장,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꽃게 잡이에 사용되며 그물망 안에 미끼(각종 생선머리 : 고등어, 갈치, 전갱이 등)를 넣어 물 속에 투입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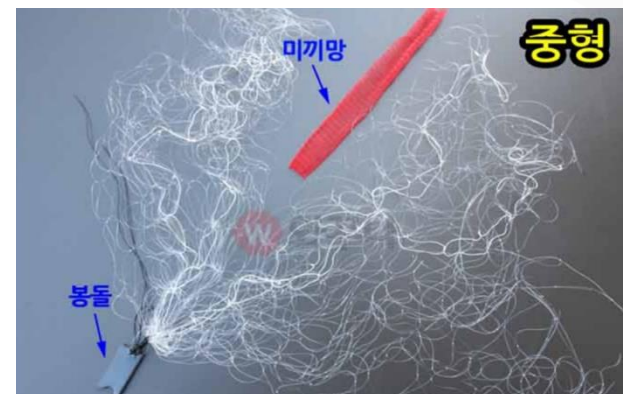
- ▶ 게그물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함
- ▶ 낚시대에 연결이 가능한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Gmarket, Coupang, Tmon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매 가능함.



✓ 검색일자 : 2021.11.8.

✓ 검색명칭 : 게그물

✓ 검색결과 : 국내 및 해외 직구 포함 9,312개
온라인 제품이 검색됨.



2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현황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3/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국민청원에 뜰채의 이용을 위해 법률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는 비어업인의 불법어업행위로 단속 중

© 뜰채

뜰채는 주로 서해안 갯벌 해안에서 사용하는 비어업인의 어업도구로 많이 사용되며, 낚시 등을 통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단순히 건져 올리기 위해 보조용 도구로 사용한 경우 등은 허용되나, 직접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뜰채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손쉽게 구매 가능함

< 뜰채의 형태 >



MAVER

네이버페이

N 쇼핑

쇼핑 LIVE

뜰채

상세검색

카테고리 더보기

쇼핑연관

다이와

시마노

민물뜰채

하드로드케이스

합사3호

바다

'뜰채'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카테고리

스포츠레저

생활건강

음식/육아

디지털

브랜드

다이와

바닉스

해동

천류

시마노

키워드추천

바다뜰채

민물뜰채

허루뜰채

낚시뜰채

저렴

~40cm

40cm~50cm

50cm~60cm

60cm~

가격

1만원 ~ 2만원

2만원 ~ 3만원

3만원 ~ 4만원

4만원 ~ 6만원

6만원 ~ 9만원

배송/제작/색상

무료배송

오늘출발

현물

카드할인

쿠폰

적립

추가할인

색상

빨간

노랑

초록

파랑

검정

흰색

전체 503,634

가격비교 28,349

네이버페이 144,310

백화점·홈쇼핑 68,772

쇼핑원도 305

해외직구 84,405

네이버 형질순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등록일순

리뷰 많은순

쇼핑원선택

상품타입(전체)

40개의 보기

카즈미 프리미엄 해루용 120 해루질 뜰채 각살

광고 39,900원

스포츠레저 > 낚시 > 낚시용품 > 뜰채/망/메시

등록일 2021.03 > 판매하기 9 > 신고하기

카즈미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비교

- ✓ 검색일자 : 2021.11.8.
- ✓ 검색명칭 : 뜰채
- ✓ 검색결과 : 국내 및 해외 직구 포함 503,634개 온라인 제품이 검색됨.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5/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㉔ 해루질

- 해루질은 전라 및 충남 지역의 방언으로 **밤에 얇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 예로부터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랜턴 등)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임.

〈 해루질 기본착용 장비 〉

- ▶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장비(장화, 장갑 등)**을 착용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에서 주로 행함
- ▶ 여가시간이 늘면서 취미나 체험으로 해루질을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음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6/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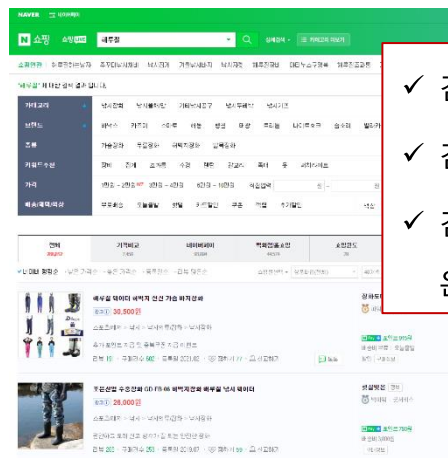
㉮ 해루질

- 해루질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실시되고 있음.

해루질안전수칙

1. 반드시 지역원주민 및 해당지역의 유경험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바다, 특히 발바다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유경험자와 동행해야 합니다.
2.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장갑, 갯벌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갯벌에서는 날카로운 조개껍질, 굴껍질, 바윗돌 등으로 발이나 손을 다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장갑, 갯화 등으로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3. 해무(바다에 끼는안개)가 발생하면 해루질을 중단해야 합니다.
발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해무입니다. 해무가 발생하면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해무가 발생하면 해루질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4. 휴대폰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해루질을 시작하면 항상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 동선을 점검해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폰은 필수 휴대해야 하며, 인근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호각등을 지참하면 더욱 좋습니다.
5. 최소한 2인 이상으로 해루질을 체험합니다.
체험중 돌발상황 발생 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해루질을 중단해야 합니다.
갯벌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물이 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갯고랑이나 구릉지역은 순식간에 물이 밀려와 매우 위험합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전한 해변가로 이동하고 해루질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갯고랑은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갯고랑은 갯벌에 나 있는 물길로 다른 곳에 비해 움푹 패여 있어 밑물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물이 차고 볼이 많아 발이 빠져 움직이지 못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사전 정보수집으로 갯고랑 위치등은 미리 파악해 두고 갯고랑 주변의 해루질 체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일반인들에게 해루질은 취미 혹은 레저활동으로 여겨져, 수산자원 훼손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클 수 있음
- ▶ 제주도에서는 해녀와 동호회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야간 갯벌체험(해루질)을 나갔다가 **실종되는 사례**로 해경이 수색을 벌이는 사고 발생



- ✓ 검색일자 : 2021.11.15.
- ✓ 검색명칭 : 해루질
- ✓ 검색결과 : 국내 및 해외 직구 포함 288,612개 온라인 제품이 검색됨.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7/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 해루질

- 해루질 장비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는 약 100종이며, 해루질을 위한 채취장비와 랜턴, 장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브랜드의 대부분의 상품은 랜턴임

〈 해루질 관련 장비 온라인판매 브랜드 리스트 〉

브랜드	상품수	주요장비	브랜드	상품수	주요장비
1300K	73	헤드랜턴	APIS	100	장화, 조과통 등
BUCK703	100	잠수경	COMS	131	헤드랜턴
HANVIT	157	헤드랜턴	HDF	32	기포기, 야크 등
LED LAB	79	랜턴	NOMADE	91	헤드랜턴
SPA	307	장화, 조과통 등	SJ	38	헤드랜턴
STM	40	슈트	TB	289	장화, 슈트 등
TNT	60	랜턴	TT	83	랜턴
...					
태광	50	장화	텐바이텐	22	랜턴
트리론	102	물채, 갈고리 등	파이어플라이	27	랜턴
프록스	27	장화	하이맥스	855	랜턴
하트랙스	50	조과통 등	화예	35	랜턴
합계	10,646	-	합계	12,130	-

*네이버 쇼핑(검색일:2021.11.16.)에서 "해루질"로 검색하여 노출된 브랜드 결과임

- ▶ 랜턴 중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나이트코어"의 경우 4,622종의 제품이 인터파크, 11번가, 쿠팡 등의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과 개별 쇼핑몰 플랫폼을 통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음.

〈 해루질 관련 갈등 및 안전사고 〉



출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634&code=11131426&cp=nv>)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11023032100063?input=1195m>)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8/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① 잠수용 스쿠버장비

최근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와 달리 공기통 없이 물안경(수경)과 스노클(숨대롱)만 이용하여 잠수하는 일명 '프리다이빙'에 대한 명확한 단속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을어장 내에서 '프리다이빙'을 통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어업인의 마을어장에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해 어업인들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마을어장에서의 비어업인의 행위를 제한하였음

- ▶ 2020년 비어업인의 잠수용스쿠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가 단속된 건수만 99건, 단속된 인원은 151명에 달하는 등 불법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강탈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3호(2021.04.07.) 주요 내용

-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내로 한정
-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 사용 금지,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 사용 금지
- 신고어업인과 협업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금지
-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는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관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을 포획·채취 금지

〈 잠수용 스쿠버장비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단속 현황 〉

(단위 : 건,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단속건수	단속인원	단속건수	단속인원	단속건수	단속인원	단속건수	단속인원
계	77	106	75	105	89	134	99	151
남해청	12	17	17	26	28	44	40	60
동해청	49	68	38	52	43	51	25	25
서해청	12	16	13	15	14	34	21	44
제주청	2	2	1	2	2	2	7	8
중부청	2	3	6	10	2	3	6	14

* 출처 : 해양경찰청

나. 비어업인 규정 비허용 어구(9/9)

2)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및 방법

㉠ 기타
변형도구

최근 수중카메라를 이용한 모니터링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대량으로 쉽게 포획하여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

- ▶ 파워비전이 개발한 로봇인 '파워레이(PowerRay)'는 수심 30m까지 내려가 물속을 관찰할 수 있는 로봇으로 통신용 안테나와 미끼를 갖춘
- ▶ 4K UHD 카메라를 탑재해 안드로이드나 iOS 디바이스로 와이파이를 이용해 물고기 움직임을 알 수 있고, 앱을 이용해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 어류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음
- ▶ 추가로 빌트인 조명을 이용해 물고기를 유인함

〈 낚시용 수중로봇 '파워레이' 〉



출처 : 로봇신문사, “파워비전, 낚시용 수중 로봇 '파워레이' 개발”(2017.01.03.)

- ▶ 쪽대의 손잡이가 길어져서 뜰채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시킨 도구가 제작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수산자원 포획을 목적으로 개조될 위험성이 높음.

〈 변형된 쪽대 〉



다. 시사점

- 법령 등을 통해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 및 방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및 다양한 참여로 인해 규정 외 장비 및 도구 또는 변형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 규정에 맞지 않는 어구 및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 및 구매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여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약한 상태임.

구분	사용 어구	세부 내용
수산자원관리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허용 어구	투망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 주로 그물로 된 어구를 어선에서 물속에 투하하는 것
	반두, 쪽대, 4수망	양쪽 끝에 가늘고 긴 막대로 손잡이를 만든 그물
	외줄낚시	낚시줄 한 가닥에 낚시를 한개 또는 여러개를 달아 한쪽 끝을 손으로 잡고 대상물을 낚아 잡는 어업
	가리, 외통발	통속에 미끼를 넣어서 수산동물을 유인하여, 통속에 갇히도록 하여 잡는 어업
	낚대	동해나 남해에서 긴 장대에 낚을 매달아 베어 해조를 채취하는 어구
	집게, 갈고리, 호미	집게는 주로 갯벌에 서식하는 어종(쏙, 개불 등)들을 포획하기 위한 장비 갈고리, 호미는 주로 꼬막이나 바지락 등 갯벌에 대량으로 군집하여 서식하는 패류를 채취

구분	사용 어구	세부 내용
규정상 맞지 않는 도구 또는 방법	개불펌프	1m가량 되는 길이의 펌프 형태로, 개펄의 구멍에 펌프질을 해 개불을 빨아들이는 형태
	게그물, 게포획망	주로 서해안 갯벌 해안에서 사용하는 비어업인의 어업도구
	뜯채	백사장,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꽃게 잡이에 사용되며 그물망 안에 미끼(각종 생선머리 : 고등어, 갈치, 전갱이 등)를 넣어 물 속에 투입하는 방식
	작살	수중레저활동(스쿠버 장비 활용) 중 끝이 뾰족한 장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
	변형도구	낚시 도구 등에 기술적 장비 보완 및 구조물의 변형을 통한 어획량 증가



수산업을 제대로 알자

비어업인 수산자원보호 개선방안

- 비어업인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환경분석(Environmental Analysis)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외부 및 내부 분석 실시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방향성 및 중점추진과제 설정의 방향성 등을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분석 프레임워크를 사용함

가. SWOT 분석(1/2)

SWOT 분석

1. SWOT 요인 도출

외부 환경분석 및 정보화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관점에서 정리

정책 환경분석	경제 환경분석	사회 환경분석	기술 환경분석	정보화 현황분석	요구사항 분석
------------	------------	------------	------------	-------------	------------

S (Strengths)	W (Weakness)
O (Opportunities)	T (Threats)

2. SWOT 분석

SO 전략	강점요인을 바탕으로 기회요인에 활용하는 전략
ST 전략	강점요인을 활용하여 위협요인에 대응하는 전략
WO 전략	약점요인을 보완하고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전략
WT 전략	약점요인을 극복하며 위협요인을 회피하는 전략

3. 핵심성공 요소 도출

핵심성공요소(Critical Success Factor, CSF) 도출

가. SWOT 분석(2/2)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 및 방법에 대한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 가능 - 규제의 대상이 명확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 방지		- 비어업인(일반국민)의 포획채취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나 매우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움 - 비어업인 대상 규제 및 법령 해석의 혼선야기 - 일반국민들은 수산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함 - 규정에 맞지 않는 도구·장비 및 방법이 사용되거나 개조 및 제조가 이뤄짐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는 해역별어종별 등에 대해 계절성(특정된 계절 집중)이 매우 강함.
기회(Opportunity)	SO(활성화) 전략	WO(보완) 전략
- 국민들의 해양레저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급격한 증가 - 어촌체험 등 비어업인의 유입요인 증가추세 -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수산 자원보호 및 환경개선활동 지속	- 비어업인 포획·채취 어구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 규제의 정의, 대상 등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	- 비어업인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 계절에 따른 비어업인 포획·채취 어종 집중관리 - 자율적인 단속 및 참여 방안 마련
위협(Threat)	ST(차별화) 전략	WT(극복) 전략
- 수산자원의 남획과 어업인들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련한 지자체 민원 지속적 제기 - 수산업법(유어징), 내수면어업법, 해양레저 관련 법 등 규정사항 검토 필요 - 비어업인(일반국민)의 수에 비하여 단속의 행정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동일 및 유사한 규정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정을 통한 혼란방지	- 지속적인 민원 사항에 대한 규제혁신창구 확대 - 법령 해석 및 규정 지침 등 마련 및 배포 - 불법 개조 및 제조 단속 강화

1 기본방향 및 목표(3/3)

나. 발전방안 도출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관련 규정과 타법과의 정비 및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보호수단을 마련
- 나아가 수산자원보호를 마련된 법령 등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위해 사전적 예방효과, 집행효과, 사후관리 효과를 검토하여 방안 수립
- 또한 마련된 방안에 있어서 전국단위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관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

SWOT matrix	SO(활성화) 전략	WO(보완) 전략	ST(차별화) 전략	WT(극복) 전략
	• 비어업인 포획·채취 어구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 규제의 정의, 대상 등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마련	• 비어업인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 계절에 따른 비어업인 포획·채취 어종 집중 관리 • 자율적인 단속 및 참여 방안 마련	•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동일 및 유사한 규정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제 개정을 통한 혼란방지	• 지속적인 민원 사항에 대한 규제 혁신창구 확대 • 법령 해석 및 규정 지침 등 마련 및 배포 • 불법 개조 및 제조 단속 강화



추진목표	관련 법제도 정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수립	일관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	-----------	--------------------------	-------------------



추진전략	• 수산자원관리법 및 규칙 정비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정비	• 사전적 예방효과 • 법령 집행효과 • 사후관리 효과	• 전국단위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법규 제정
------	--	--	--

가. 세부 발전방안 수립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은 **관련 법제도 정비**,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 **일관적인 대응 관리체계 마련**으로 구분하여 수립
-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과 관련된 타법과의 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정비**
- 실효성이 있는 **사전적 예방효과**, **집행효과**, **사후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전국단위 가이드라인과 지자체에 따라 **계절적·어종별** 특징을 고려한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연번	분류	발전방안	
1	I. 관련 법제도 정비	I-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2		I-2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3	II.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수립	II-1	사전적 예방효과 방안마련
4		II-2	현실적인 집행효과 방안 마련
5		II-3	사후적 관리방안 마련
6	III. 일관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III-1	전국단위 비어업인 수산자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7		III-2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법규 제정

비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발전방안

3개 추진목표,
7개 추진 전략 수립

나. 관련 법제도 정비

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어업인이 아닌 자는 비어업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와 방법이 제시됨
- 법령 등을 통해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 및 방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및 다양한 참여로 인해 규정 외 장비 및 도구 또는 변형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 규정에 맞지 않는 어구 및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판매 및 구매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불법여부에 대한 인지가 매우 약한 상태
- 지역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 있으며, **장비와 방법이 전문화·고도화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의 한계 발생**
- 사용 어구에 대한 개정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규제와 기준의 유지 방안을 마련하여 **비어업인의 법령을 회피하게 되는 방법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어구가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유지 방안 마련 필요**

개선방안 – 검토 1. 비어업인 정의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비어업인이지만, 어업인이라고 할지라도 허가 등으로 인정된 어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비어업인으로써 법령 적용
- 비어업인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규정상의 정의를 추가 및 수정하는 것은 규정을 위한 규정마련의 행위에 불과함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의 비어업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의 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어업인의 신고허가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규제사항 제시**
 ”

나. 관련 법제도 정비

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개선방안 – 검토 2. 비어업인 허용 어구 및 방법

-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어구 및 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 연계 및 세부기준 마련

구분	개선방안
외줄 낚시	-비어업인이 낚시활동을 할 수 있는 해안 해상 선상 등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됨 -비어업인의 낚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을 받아 관리 추진'
투망	-어업인들에게 적용된 그물과 및 금어기, 어종별 크기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비어업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 필요 -비어업인의 공간적 제한이 없어 어선들과의 피해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간적·공간적 범위에 대한 정의 필요
외통발	-통발 속 미끼의 종류 제한 -비어업인의 경우 사용 가능한 통발의 크기를 제한
가리	-수산자원을 가두어 잡는 방법,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은 통발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
낚대	-주로 채취관광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도록 개선
집게, 갈고리, 호미	-채취·관광(어촌체험마을 등)에 필요한 장비세트화 등 지역별 관광상품화
손	-포획·채취 시간 및 용량 등 기준 마련

No	어구	세부사항	허용시간	반출허용량
1	투망	• 수심이 얕은 곳에서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손투망 허용 • 손투망 이외 다른 장비 이용 안됨 • 그물직경 2-3m • 그물크기 20mm내외	•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생물의 해체나 차치작업없이 생체 그대로의 모습에 한하여 반출 • 1인당종복업이 1종류만 가능 • 어류, 갑각류, 연체류: 10리터(크기 무제한) • 패류, 해조류, 파충류, 7타: 1킬로그램(1킬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용량)
2	꼭대, 빈두 4수망	• 길이: 손잡이 포함 120cm 이내 • 그물크기: 100cm×100cm • 그물크기: 20mm내외 • 그물크기: 60cm X 60cm • 그물크기: 20mm내외 • 미끼: 인조미끼, 가공미끼	•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생물의 해체나 차치작업없이 생체 그대로의 모습에 한하여 반출 • 1인당종복업이 1종류만 가능 • 어류, 갑각류, 연체류, 패류, 해조류, 파충류, 7타: 1킬로그램(1킬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용량)
3	외줄낚시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준용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준용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준용
4	가리 외통발	• 크기: 30cm × 60cm 이내 • 미끼: 인조미끼, 가공미끼 • 그물코 20mm내외	•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일몰 30분전까지 투망한 통발은 회수해야 함.	• 생물의 해체나 차치작업없이 생체 그대로의 모습에 한하여 반출 • 1인당종복업이 1종류만 가능 • 어류, 갑각류, 연체류, 패류, 해조류, 파충류, 7타: 1킬로그램(1킬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용량)
5	낚대	• 낚 길이: 손잡이 포함 40cm 이내 • 낚대: 20cm이내 • 정채: 작업하는 수심을 고려하여 연결가능	•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생물의 해체나 차치작업없이 생체 그대로의 모습에 한하여 반출 • 1인당 종복업이 1종류만 가능 • 해조류: 1킬로그램(1킬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용량)
6	집게 갈고리 호미	• 길이: 손잡이 포함 100cm 이내 • 갈고리의 갈고랑치는 3개 이내 • 길이: 손잡이 포함 30cm이내 • 머리: 5cm이내 • 농업용 중시리즈 • 길이: 손잡이 포함 30cm이내 • 머리: 8cm×15cm이내	• 일출 30분 후 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생물의 해체나 차치작업없이 생체 그대로의 모습에 한하여 반출 • 1인당종복업이 1종류만 가능 • 어류, 갑각류, 연체류: 10리터(크기 무제한) • 패류, 해조류, 파충류, 7타: 1킬로그램(1킬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용량)
7	손	• 장갑(안전용)을 위해 착용가능)		

나. 관련 법제도 정비

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개선방안 – 검토 3. 비어업인 미끼사용 기준

- 미끼의 종류별(가공 및 인조 미끼) 특정물질 함량기준에 대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차용하여 적용하며, **향후 비어업인의 어구 및 방법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사항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①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 7. (생략)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 ----- ----- ----- ----- 1. ~ 7. (생략)
② (신설)	② (생략)
③ (신설)	③ <u>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u> 1. <u>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18과 같다.</u>

개선방안 – 검토 4. 비어업인 잠수용 스쿠버 장비 기준

- “**1안(허용 가능 장비 제시(Positive list 규제))**”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비어업인의 스쿠버 활동 및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방안 제시

잠수용 스쿠버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하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수경
2. 잠수복 및 잠수모
3. 수중칼(인전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 허용)
4. 호수리끼
5. 그 밖에 잠수용 스쿠버장비와 유사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2안(허용금지 장비 제시(Negative list 규제))**”은 「수산자원관리법」상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어 비어업인이 악용하는 '프리다이빙'을 규제하기 위해 비어업인 사용금지 도구에 물안경(수경)과 스노클(숨대롱) 및 오리발 추가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공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 스노클, 오리발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1.~7. 현행과 같음

나. 관련 법제도 정비

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개선방안 – 검토 5. 비어업인 수산자원 판매금지

- 취미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비어업인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생 략〉 ② 〈신 설〉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생 략〉 ②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 신 설 〉 4.~11. 생략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판매한 자 4.~11. 현행과 같음

나. 관련 법제도 정비

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방법 - 비어업인(잠수용 스쿠버 허용장비 포함) 어구 및 방법 제시

- 투망, 통발 등 어업인들에게 적용된 그물코 및 금어기, 어종별 크기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미끼의 종류별(가공 및 인조 미끼) 특정 물질 함량기준을 비어업인에게도 적용하며, 향후 비어업인의 어구 및 방법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사항 수정
 -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의 세부기준 추가, 비어업인에게 규정된 어구의 개선방법(안))
 - 포획·채취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의 세부사항 추가(제3항)
 - 미끼의 함량기준 추가(제4항)
- 수중레저장비와의 혼선 예방, 수산자원의 보호 및 비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에 대한 기준 마련
 - 잠수용 스쿠버 장비 리스트 추가(제2항)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금지 및 벌칙 추가(제5항, 제65조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출낙시(대낙시 또는 손출낙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잡게, 갈고리, 호미 7. 손 8.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④ <신 설> ⑤ <신 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신 설> 4.~11. 생략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낫대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7. (현행과 같음) 8. 허용된 어구의 세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잠수용 스쿠버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하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수경 2. 잠수복 및 잠수모 3. 수중갈(안전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 허용) 4. 호루라기 5. 그 밖에 잠수용 스쿠버장비와 유사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2.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④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⑤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판매한 자 4.~11. 현행과 같음

나. 관련 법제도 정비

1.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방법 - 비어업인(잠수용 스쿠버 허용불가장비 포함) 어구 및 방법 제시

-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에 대한 사용금지 장비를 명시함으로써 단속규정 및 악용방지(예방) 효과 발생
 - 잠수용 스쿠버 허용불가장비 리스트 추가(제1항)
 - 물안경(수경), 스노틀(숨대롱), 오리발 등 추가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공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 스노클, 오리발 등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 4. (현행과 같음)
1. 투망 2. 폭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갈게, 갈고리, 호미 7. 손 8. (신 설)	5. 낫대 [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7. (현행과 같음) 8. 허용된 어구의 세부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신 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2. 포획·채취 금지 채장 또는 채중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 설)	③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1.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신 설)	④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 신 설 > 4.~11. 생략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판매한 자 4.~11. 현행과 같음

나. 관련 법제도 정비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정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구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과 동일한 금지기간, 구역, 수심 등에 법령 개정과 관련 타 법과의 관계 검토 필요 - 투망, 통발 등 어업인들에게 적용된 그물코 및 금어기, 어종별 크기 제한 등에 대한 기준, 미끼의 종류별(가공 및 인조 미끼) 특정물질 함량기준을 비어업인에게도 적용하며, 향후 비어업인의 어구 및 방법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사항을 제시함에 따른 타법과의 관계 검토	- 둘 이상의 법령을 하나의 개정법령안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i) 부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법을 개정하면서 A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부칙에 B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과 ii)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A법과 B법을 같이 본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음.(일괄개정법령안을 만드는 방식)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어업인에게 규정되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및 개정 통발, 낚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미끼의 종류 및 특정물질 함량기준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기준 인용하여 적용

추진방법

비어업인의 <u>미끼의 종류별 함량기준</u>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0조 관련)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을 통한 개정 추진	비어업인의 <u>마을어업 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u> “마을어업 어장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마을어장 내 비어업인의 레저활동 원천 차단 및 갈등 요인 제거 가능
---	---

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1. 사전적 예방효과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별로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 있으며, 장비와 방법이 전문화·고도화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의 한계 발생
-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규제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데에는 모두들 이의가 없으나 합리적인 근거 제시를 통한 설득이 미흡할 경우 피규제자의 반발이 나타날 수 있음
- 해양레저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갈등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조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강화될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

- 비어업인의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보호와 비어업인의 해양활동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사전 예방 방안 모색**
- 해양수산부 비어업인 어업활동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및 업무사업 발굴과 더불어 수산업 분야 조직 정비를 통하여 신규 정책 및 사업의 발굴로 수산자원보호 역량 향상과 발전 도모

추진방법

- 현재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통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방법에 대한 **자가점검 및 신고 방안 제시**

이름/단체명		활동장소	
참여출연인	명	활동일시	20 ~ 20
사용 어구 및 방법	1. 사용한 어구 및 방법에 모두 체크 ☐ 투망 ☐ 쪽대 ☐ 번두 ☐ 4수망 ☐ 역중남시 ☐ 대남시 ☐ 손중남시 ☐ 가리 ☐ 외동발 ☐ 낚시대(바늘을 해저(海底)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 집게 ☐ 길고리 ☐ 호미 ☐ 손 ☐ 위의 방법외에 다른 어구 및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		
체크리스트		예	아니오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활동하셨나요?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에 해당된 수산자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금지된 어구를 소지하고 방법으로 포획·채취하셨나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안전장갑, 정화, 후예쉬 등)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작성자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2. 집행효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비어업인에 대한 포획·채취에 대하여 Positive list 규제를 통해 열거주의에 입각한 사전규제 중심으로 규제자의 재량범위가 넓고, 사후 문제발생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규제체계
- 비어업인에 대한 어구 및 방법에 대한 규제는 사용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한 이해가 쉬우며 규제의 대상이 명확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 방지할 수 있음
- 명시된 어구의 변형 등 시대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규제의 강도가 높고, 예외사항이 적기 때문에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비어업인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

개선방안

- 비어업인이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며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무분별한 수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등 생태계 훼손 방지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의무체계 및 신고포상제 마련
- 비어업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기반한 과태료 등 위법사항 단속

구분	사업	세부내용
교육	어구별 교육	•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허용된 어구의 이해와 관련 법령 및 제도 • 허용된 어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지역별 교육	• 지역적 특성에 맞춘 비어업인의 어구 및 방법에 대한 교육 • 지역별 주요 어종의 이해 • 지역별 금지구역 및 방법
	특성화 교육	• 어업인-비어업인 통합 및 특성화 교육 • 주요 갈등 사례와 이해 • 지역 및 어업인 갈등해소 및 소통방안
홍보	홍보 마케팅	• 리플렛 제작, 축제 기획 • 인쇄, 교통, 인터넷, 이메일, 웹진, 이벤트, 잡지, 안내판, 스크린, 신문, 방송사 등 광고물 제작 • 브랜드, 심볼(로고), 네이밍, 슬로건, 포장 상표 등 관리 및 활용

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2. 집행효과

추진방법

방안1. 신고의무체계 및 신고포상제 마련

신고의무체계
신고포상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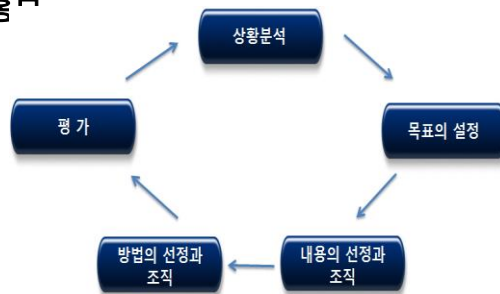


방안2. 과태료 등 위법사항 단속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 실시

방안3. 비어업인 교육 및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 개발
홍보마케팅 개발



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3. 사후적 관리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있어서 2010.5.31. 제정된 이후 16회에 걸쳐 타법 및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비어업인에 대한 어구 또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음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구 및 방법은 지속적으로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은 제정 이후 변화에 보수적인 모습으로 지속됨

개선방안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어구와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지침이나 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필요
-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규제에 대하여 규제가 도입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규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 시행으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또는 효과 분석·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규제 사후평가 실시

추진방법

- 법령 적용 전후 효과 분석 기초자료 확보 시범사업 추진

구분	주요내용
시범사업 지역	7개해역(서해북부, 서해남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북부, 동해남부, 제주권) 중 해역별 특성에 따른 사업효과 차별성 고려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자료수집 기간	사업 이전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단속 및 갈등 어종, 횡수, 형태 등(시점조사) 사업 이후 : 5년
조사내용	공간적 : 지역·해역별 주요장소(마을어장, 연안해역, 어항 등) 시간적 : 단속 및 갈등 발생시기 내용적 : 어종, 어구 및 방법 등
사업내용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를 위한 법령개선 효과 검증·분석 및 Data Base 구축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련 법령개선을 통한 예방효과 및 경제적 효과분석
- 신규로 증가하는 해양수산부 비어업인 어업활동 분야의 사업 발전을 위하여 증가할 행정수요 대응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서, 지자체, 사업지원단의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사업 발굴, 모니터링,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 TF 구성 및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가능한 체계 구축 도모

라. 일관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1. 전국단위 가이드라인

현황 및 문제점

- 비어업인에게 허용된 어구 및 방법이 다양한 해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어구 및 방법이 사용되지만, 지역별·계절적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비어업인에 적용되는 자치법규(조례), 행정규칙(고시)을 마련하거나 준비 중에 있음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고시 제2005-123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치 제2021-86호

개선방안

-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하고 적법한 조례 입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 등 가이드라인 제공**
-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는 위임조례라기 보다는 자치조례이며, 필수조례라기보다는 임의조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공

추진방법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하여 기 적용(예정)되는 강원도, 제주도, 충주시의 자치법규(조례), 행정규칙(고시)을 통해 우선 필요항목 추출
- 표준조례는 각각 다양한 지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4조 허용 및 제한 기준

제5조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부칙 시행일

라. 일관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2. 지자체별 자치법규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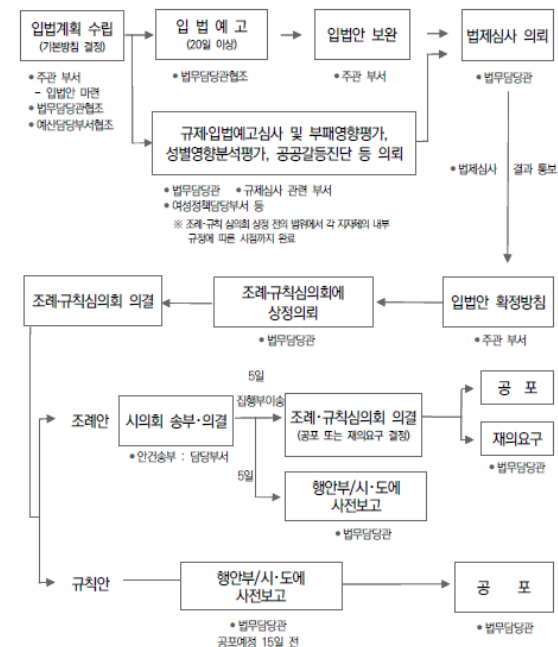
- 지역별로 마련된 기준들은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 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추진될 수 있음
-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법률처럼 국민과 행정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나, **행정규칙은 국민과 법에 대해 구속이 없는 것이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주시의 고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직내부에서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절차·기준 등에 관해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써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국민이나 법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음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해역적·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의 보호와 비어업인의 해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상위법상 위임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법규(조례·규칙 등)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등 위법한 규정이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안에서 일률적 기준으로 규정된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 강구

추진방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규제의 신설·강화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위임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



감사합니다.

